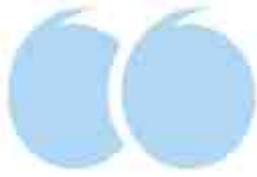




강 원 도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의무화 및 제출방법 간소화 (지법 §103조의23, 103조의37)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신 설> □ 첨부서류를 납세지 지자체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에 안분명세서(서식신설) 추가 □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지법 §103조의62)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세지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지가 같은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특별징수 납세지 지자체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특별징수 납세지와 신고지가 다른 경우 신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로 봄(기납부세액 사업장 안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담세액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은 본점에 기재 - 본점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 - 특별징수지와 신고지 지자체간 정산절차 협약 근거마련 ※ 신고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제출[별지43호의5 서식]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법 §100조의19 ①~③)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시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일 [별지 제42호의2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연 1회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3월[별지 제42호의4] 서식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적용시기 > 2015. 1. 1.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특광역시 내 일괄신고납부 편의 제고 (지령 § 88)

종 전	개 정
□ 특광역시내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일괄납부만 규정	□ 특광역시내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에 일괄신고납부토록 개선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기준

■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하향 조정 (지기법 § 53조의5)

종 전	개 정
□ 미납(과소납)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 (미납(과소납)세액×5%) + (지연일자×1만분의3)	□ 미납(과소납)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 (미납(과소납)세액×3%) + (지연일자×1만분의3)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간소화 (지법 § 101조, 103조의28)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환급 신청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서식 신설 (지칙 § 48조의4, 별지44호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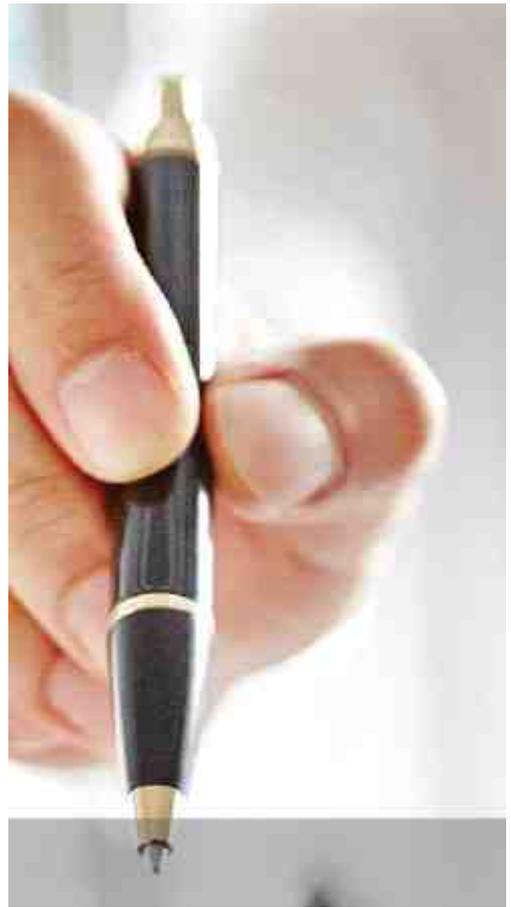
종 전	개 정
□ 법인확정신고시 안분명세서 서식 미규정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를 추가하고 안분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44호의6)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첨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 추가 (별지 제43호의 5 서식)

종 전	개 정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제출 「별지 제43호의5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제출 - 「별지 제43호의5 서식」에 납세지 정보 추가 ※ 납세지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 시·군·구



**독립세로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는 이렇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 종전에는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3 사업년도 이전	2014 사업년도 이후
세 액	법인세액 × 10%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1%~2.2%] * 세액공제, 감면 없음
신고납부 기 한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4.30)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한 + 1개월	* 확정신고 : 종전과 동일 *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시
신고특례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반드시 신고 및 납부 * 납부만 할 경우 20% 가산세
신고서류	지방소득세 신고서 지방소득세 안분계산내역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안분명세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특별징수세액, 가산세액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신고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방식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

- ☑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 종 전 〉		〈 변 경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1%	-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200만원

신고·납부 기한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동시(제103조의24) ※ 종전의 경우 국세의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결손법인도 확정신고하며 법인세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함(확정신고 가감제 폐지)

- ☑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처리 → 20% 가산세 부과됨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신고합니다.

안분신고 과세체계

구 분	내 용
납 세 지	법인의 사업장이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안분대상	산출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안 분 율	$\frac{(\text{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div 2$ ※ 소숫점 6자리
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각각 제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포함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신고서 안분신고 편리>
특·광역시 내 신고납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우리도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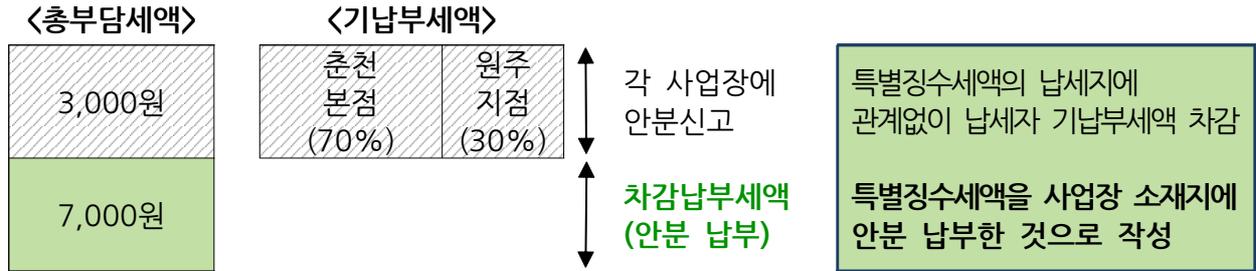
안분신고 유의사항

- ☑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건설현장사무소, 연구시설, 기숙사, 연수원 등 포함
- ☑ 종업원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 사업장용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지 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 안분 및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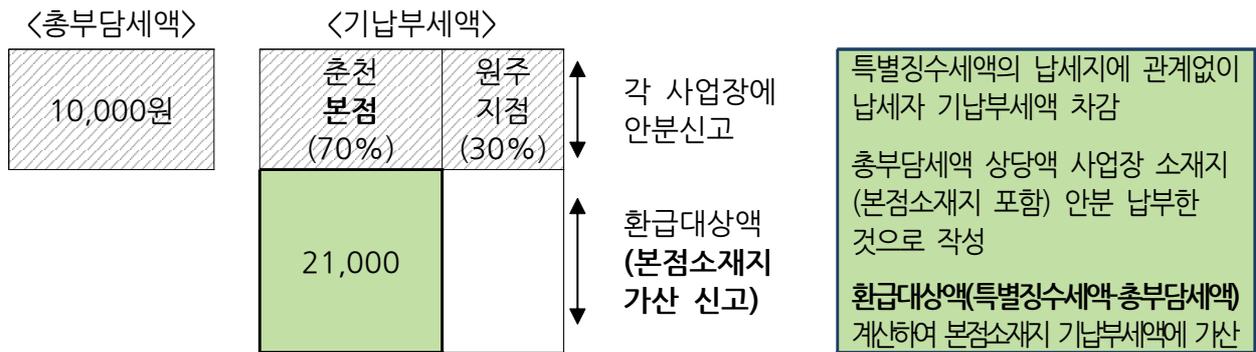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000원, 본점 춘천(70%), 지점 원주(30%), 특별징수지 강릉, 동해



구 분	사 업 장		특 별 징 수 지	
	춘천(70%)	원주(30%)	강릉	동해
총부담세액	10,000		2,000	1,000
세액안분	7,000	3,000		
기납부세액	3,000			
안분	2,100	900		
차감납부할세액	4,900	2,100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분은 본점가산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춘천(70%), 지점 원주(30%), 특별징수지 강릉, 동해



구 분	사 업 장		특 별 징 수 지	
	춘천(70%)	원주(30%)	강릉	동해
총부담세액	10,000		2,000	1,000
세액안분	7,000	3,000		
기납부세액	31,000			
안분대상액	10,000			
안분	7,000	3,000		
본점가산	21,000 (31,000-10,000)			
소 계	28,000	3,000		
차감납부할세액	-21,000	0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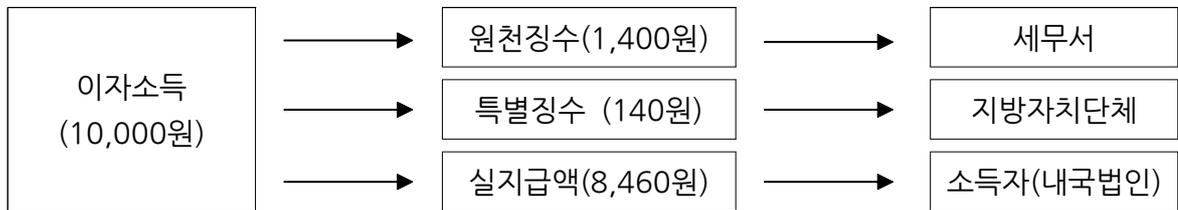
‘15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 ▶ **(원천징수 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은 이자배당소득액 - 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액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자소득 지급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16년부터 매년 3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대상)**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 ▶ **(제출방법)** 위택스 전자제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파일, CD, 서면, 우편)
- ▶ **(제출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소득세법 서식에 납세지정보 추가 기재

특별징수된 법인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

- ☑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확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를 제출하며
- ☑ 안분신고서 작성시 기납부세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후 본점소재지에서 환급받습니다.
- ☑ 특별징수납세지(은행 지점소재지 등) 지자체에 납부한 세액을 이체받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하므로 **납세지 오류 기재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유의사항

- ☑ 사업장[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2016년부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신고서 부속명세서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가산세액명세서 반드시 제출(서식 개정)
- ☑ 2016년부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으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습니다.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 지급명세서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까지 제출
-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 감면 사항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공제 · 감면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저세율은 운영(0.9%, 1.2%)
- ☑ 종전에는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 처리[무신고가산세 20%]
- ☑ 2014년 이후 사업년도 귀속분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법인세 결정·경정시에도 지자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고지전까지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2013년 이전 사업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결정·경정시 고지서 납부기한,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총액(가산세포함)의 10% 신고납부
- ☑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문의

기 관	전화번호
춘천시	250-4547
원주시	737-2321
강릉시	640-5075
동해시	539-8434
태백시	550-3904
속초시	639-2285
삼척시	570-3785
홍천군	430-2353
횡성군	340-2101
영월군	370-2118
평창군	330-2241
정선군	560-2291
철원군	450-4583
화천군	440-2284
양구군	480-2296
인제군	460-2042
고성군	680-3283
양양군	670-2786



강 원 도

[033]249-2295